



제 416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역과학기술혁신법안

검 토 보 고

〈 지역 주도 과학기술혁신기반 마련 〉

■ 박충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095호)

2024. 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임 명 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1
III. 주요내용	2
IV. 총괄 검토	4
1. 제정안의 발의 배경	4
2. 제정안의 체계	6
3. 총괄 검토의견	7
V. 주요 항목별 검토	12
1. 제1장 총칙	12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12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3조·제4조)	17
2. 제2장 지역과학기술혁신 추진체계	19
가.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안 제5조·제6조)	19
나. 지역과학기술 투자 확대 및 지역과학기술 중장기 투자 혁신 전략 수립(제7조·제8조)	24
나. 지역과학기술위원회, 전담기관, 정책연구센터 등(제9조·제10조·제11조)	28
다. 지역연구개발사업 등(안 제12조·제13조·제14조)	32
3. 제3장 지역과학기술혁신 관련 주체의 육성 등	37
가. 지역공공연구기관, 지역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지역기업연구소 등(안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	37

4. 제4장 지역과학기술혁신을 위한 기반 및 환경 조성	43
가. 지역과학기술 집적단지·지역과학기술인(안 제19조·제20조·제21조)	43
나. 지역과학기술 교육·문화, 지역문제 해결, 지역과학기술정보유통 체계, 규제 개선 에 관한 사항(안 제22조·제23조·제24조·제25조)	47
5. 제5장 보칙 등	52
가. 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벌칙(안 제26조·제27조·제28조)	52

※ 참고자료

1.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23~'27)	55
2. 2023년 지역 과학기술혁신 역량평가	60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충권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6. 3.

다. 회 부 일 : 2024. 6. 11.

II. 제안이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그 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 산업과 일자리가 점점 더 수도권으로 집중됨에 따라 지역은 청년을 중심으로 인구가 유출되어 가까운 미래에 소멸될 위기에 직면해 있음.

이렇게 위기에 처한 지역이 다시 활력을 찾고, 청년들이 지역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산업 경쟁력과 혁신의 원천인 과학기술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음.

그러나 연구개발 투자, 연구기관 및 기업의 연구 기능, 우수한 연구인력 역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은 과학기술 역량이 부족하며, 여전히 정부 주도로 관련 정책과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지역이 과학기술에 관심을 갖고 지역에 특화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기도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지역의 연구 역량을 확충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기업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우수한 인재가 지역에 정착함으로써 지역이 활력을 되찾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지역 주도로 지역에 특화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정부는 이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추진체계를 구축하며, 지역 산·학·연의 연구역량 강화 및 지역의 자생적인 연구생태계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가 5년 단위의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을 수립하고, 혁신계획의 추진을 위해 정부가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나. 시·도지사가 지역과학기술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목표치를 설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5년 단위의 지역과학기술 중장기 투자 혁신 전략을 수립하는 등 지역과학기술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투자를 촉진하고, 효율화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역과학기술 정책과의 부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역연구개발사업을 지정하고, 이에 특화된 평가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12조).

라. 지역거점연구기관, 지역 대학 협력연구단을 지정하는 등 지역 공공연구기관 및 대학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마. 지역기업부설연구소의 육성,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역 유치 및 지역기업부설연구소의 공통 기술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을 규정함(안 제17조).

바. 지역과학기술 집적단지의 활성화 및 집적단지 간 연계·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 추진, 실태조사·진단 및 평가·컨설팅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

사. 지역과학기술인을 양성·개발하고, 지역과학기술인이 지역에 정착하여

지속적,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인재양성 및 활용,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정책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 및 제21조).

아. 지역 주도로 지역이 직면한 문제를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자. 지역과학기술 관련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통계 및 실태조사, 수요조사, 지역과학기술정보유통체계 등 지역과학기술정보를 생산하고, 유통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IV. 총괄 검토

1. 제정안의 발의 배경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전체의 53%가 수도권과 대전에 분포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우리나라 전체 연구개발투자의 79%가 수도권과 대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연구개발조직 전체의 68%가 수도권과 대전에 분포하고 있어 과학기술 자원 및 역량이 수도권과 대전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처럼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간 과학기술 자원 및 역량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산업·경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미국, 영국 등 해외 주요국도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 기반의 지역 혁신정책을 추진 중임.

< 해외 정책 동향 >

미국	「반도체와 과학법」에 따라 지역기술허브 구축에 100억 달러를 투자, 센터별 핵심기술 분야 연구개발 중심 생태계 구축을 통한 대도시외 지역 성장 추진
영국	지역별 특성, 강점을 고려하여 구축된 9개 Catapult center를 중심으로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산학협력 R&D 및 중소기업 지원을 수행
네덜란드	지역 산학연 모델을 개발하고, 지역혁신기구를 통해 국가-지방정부 간 협력을 통해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4대 혁신 클러스터를 육성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7.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지역과학기술 관련 정책 및 사업이 여러 개별법을 근거로 산발적으로 추진¹⁾되고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집적단지의 육성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산업기술

있어 일관성이 부족하고 연계와 협력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고,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²⁾ 및 제8조의3(조례의 제정)³⁾에서 지방과학기술을 진흥하기 위한 종합계획과 시책의 수립·추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정책과 사업의 추진을 중앙정부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과 사업을 집행하는 데에 한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제정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역 주도로 지역에 특화된 과학기술 정책과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이 자생적 혁신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분산되어 있던 지역과학기술 정책과 사업을 체계적으로 규율하여 정책과 사업의 지속성과 이행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의된 것으로 보임.

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산·학·연 협력 및 사업화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함.

2)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방의 과학기술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하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2. 과학기술기반 구축의 지원
3. 지방과학기술진흥 성과의 확산 및 산업화 촉진
- 3의2. 지방의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 등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의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방의 과학기술인력과 산업인력의 양성 및 과학기술정보 유통체제 구축 등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지방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에 있는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 등이 수행하는 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3)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의3(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제정안의 체계

제정안은 제1장 총칙(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2장 지역과학기술혁신 추진체계(제5조부터 제14조까지), 제3장 지역과학기술혁신 관련 주체의 육성 등(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4장 지역과학기술혁신을 위한 기반 및 환경 조성(제19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5장 보칙 등(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을 포함한 총 2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지역과학기술혁신 추진체계	제5조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의 수립 및 조정
	제6조 지역혁신계획의 추진 등
	제7조 지역과학기술 투자 확대
	제8조 지역과학기술 중장기 투자 혁신 전략 수립
	제9조 지역과학기술위원회
	제10조 지역별 과학기술 전담기관
	제11조 지역과학기술 정책연구센터
	제12조 지역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
	제13조 지역 간의 과학기술 협력 촉진
	제14조 지역과학기술 투자협약
제3장 지역과학기술혁신 관련 주체의 육성 등	제15조 지역공공연구기관의 육성 등
	제16조 지역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제17조 지역기업연구소의 육성 및 유치
	제18조 지역 내 산학연 협력의 촉진 등
제4장 지역과학기술혁신을 위한 기반 및 환경 조성	제19조 지역과학기술 집적단지 활성화 및 연계·협력
	제20조 지역과학기술인 양성 및 활용 촉진
	제21조 지역과학기술인 정주여건의 개선 등
	제22조 지역과학기술 교육·문화 확산
	제23조 과학기술을 활용한 지역문제 해결
	제24조 지역과학기술정보 생산 및 유통체계 구축 등
제5장 보칙 등	제25조 지역과학기술 관련 규제 등의 개선
	제26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
	제2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8조 벌칙

3. 총괄 검토의견

현행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⁴⁾의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6조⁵⁾의 “지역과학기술 및 정보통신의 진흥”과 같이 현재 지역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관련 계획의 수립이나 시책 추진 위주로 마련되어있는 것으로 보임([참고1]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23~'27)).

반면, 제정안은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와 연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지역중장기투자혁신전략을 세우

4)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방의 과학기술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하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2. 과학기술기반 구축의 지원
3. 지방과학기술진흥 성과의 확산 및 산업화 촉진

3의2. 지방의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 등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의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방의 과학기술인력과 산업인력의 양성 및 과학기술정보 유통체계 구축 등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지방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에 있는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 등이 수행하는 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지역과학기술 및 정보통신의 진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의 진흥을 위하여 지역의 과학기술연구·교육기관 육성, 지역의 연구개발인력 및 정보통신인력의 확충,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촉진, 연구개발정보 유통체계 및 시설·장비 등 혁신기반 조성, 과학기술혁신 성과의 확산 및 산업화 촉진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도록 규정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지역별 과학기술 전담기관 설치 또는 지정, 지역과학기술 정책연구센터 지정, 지역연구개발사업과 지역 주도사업, 지역거점연구기관 지정, 지역기업연구소의 육성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

이처럼 제정안은 현행 제도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관련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 방식에서 지역에 과학기술혁신 및 연구 개발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는 바, 다음의 검토의견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헌법」 제127조⁶⁾에서 과학기술 혁신과 인력개발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조⁷⁾의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사무범위에서는 과학기술 개발 부분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경제·산업 경쟁력과 혁신의 원천인 과학기술이 지역의 미래

6) 「대한민국 헌법」

제127조 ①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③ 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7)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8. 8., 2024. 1. 9.>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2. 주민의 복지증진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7. 국제교류 및 협력

성장 동력원으로서 가지는 역할과 위상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겠으나,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은 한정된 재정 자원을 동원하여 국가 전체적인 차원의 문제를 고려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함.⁸⁾

물론 제정안은 제5조제6항에서 지역이 주도하여 수립한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연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은 수립 주체가 지역이라는 점에서 해당 지역 중심의 국지적인 관점에서의 최적화된 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할 가능성이 높으며, 국가 전체의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과학기술 정책 방향과 상충될 여지가 있음.⁹⁾

참고로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평가항목인 “과학기술적 타당성” 항목에서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분석 시 지역 R&D 사업의 경우 국가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특정 주체 및 지역의 문제로 한정되어 사업이 제시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는데,¹⁰⁾ 이는 지역 R&D 사업은 특정 주체 및 지역의 문제로 한정될 가능성이 타 R&D 사업보다 높다는 점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의미함.

8) 「과학기술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9) 「과학기술기본법」

제5조(과학기술정책의 중시와 개방화 촉진) ① 정부는 과학기술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통하여 과학기술이 국가의 경제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전략을 달성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창의적 연구개발과 개방형 과학기술혁신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1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 2023.3., p.87.

따라서, 국가의 경제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전략을 달성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동원해야 하는 과학기술정책의 역할을 고려하여 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셋째, 제정안은 지역 주도의 과학기술혁신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국가의 지역에 대한 기여나 책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지역의 국가에 대한 기여나 책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데, 과학기술혁신 역량이 미흡한 지역에 책무를 배제한 권한 이양만을 규정하는 것은 공공재원 활용의 비효율성을 발생시킬 수 있고,¹¹⁾ 과학기술혁신 역량이 부족한 지역에는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참고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발간한 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 보고서¹²⁾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과학기술혁신 역량이 가장 우수한 경기를 100%로 보았을 때, 서울, 대전은 각각 95.9%, 78.7%이며, 해당 지역 외 경북 40.5%를 제외하고는 모두 40% 이하로 나타남([참고2] 2023년 지역 과학기술혁신 역량평가).

그런데,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일정 비율을 지역과학기술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목표치를 세우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안 제7조제2항)은 재정자립도가 약하거나 과학기술혁신 역량이 부족한 지역¹³⁾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1)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지역 주도 과학기술혁신 기반 국가혁신성장 개념 연구 : 지역의 역할과 한계, 2023.11

1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국가과학기술혁신 역량평가를 기반으로 복합지표 평가모형인 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R-COSTII)를 개발하고 매년 지역별 혁신역량을 평가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제정안에서는 지역연구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거쳐 성과가 우수한 사업에 대해 재정적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안 제12조제5항), 이는 과학기술혁신 역량이 우수한 지역과 부족한 지역간의 편차를 오히려 확대시키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13)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발간한 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보고서에 따를 때, 서울, 경기, 대전을 제외한 대다수의 지역은 과학기술혁신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V. 주요 항목별 검토

1. 제1장 총칙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1) 제정안의 내용

안 제1조 목적규정은 동 제정법률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요약한 것이고, 안 제2조는 “지역과학기술”, “지역과학기술혁신”, “지역공공연구기관”, “지역과학기술혁신주체”, “지역과학기술인”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음.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과학기술혁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 자율적인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지역과학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과학기술”이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공통의 기술적·산업적·경제적·사회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과학기술 및 이와 관련된 활동을 말한다. 2. “지역과학기술혁신”이란 지역과학기술과 관련하여 제4호에 따른 지역과학기술혁신 주체가 연구개발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역량을 확보하고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에 유용한 성과를 창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3. “지역공공연구기관”이란 지역에 소재한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제 정 안

-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역과학기술혁신에 필요성을 인정하여 지정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4. “지역과학기술혁신 주체”란 지역과학기술혁신을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이하 “대학 등”이라 한다)
- 나. 제3호에 따른 지역공공연구기관
- 다.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및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관련 법인·단체
- 마.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 분야의 비영리법인
-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과학기술혁신 및 연구개발·사업화 촉진 등과 관련되는 법인 또는 단체
5. “지역과학기술인”이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기술적·산업적·경제적·사회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이학·공학 등의 분야와 이와 관련되는 학제 간 융합 분야(이하 “과학기술 분야”라 한다)에서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검토의견

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첫째, 안 제2조제1호의 “지역과학기술”의 정의에 불명확하고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임. 제1호의 “공통의 기술적·산업적·경제

적·사회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과 “이와 관련된 활동”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기술의 정의에 활동을 포함시키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임.

둘째, 안 제2조제3호에서는 “지역공공연구기관”을 ‘지역’에 소재한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로 정의하고 있는데, ‘지역’의 범위가 불명확함. 제정안에 따르면, “지역공공연구기관”의 범위에 포함될 경우 제3조제3항에 따른 책무나 제15조제4항에 따른 노력의무를 지게 되는 등 권리·의무에 변동이 생기므로 ‘지역’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셋째, 안 제2조제3호나목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정부가 출연하고 과학기술분야의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¹⁴⁾으로서 특정 지역의 과학기술혁신을 위하여 설치된 기관이 아니므로 지역공공연구기관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특히, 안 제15조제4항에서 지역공공연구기관은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등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0조제3항에서 지역공공연구기관은 신규 연구개발인력 채용 시 소재지의 시·도에 소재한 대학의 학

1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정부가 출연하고 과학기술분야의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생이나 졸업생을 우대하여 채용하는 등 해당 지역 인재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무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부여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넷째, 안 제4호라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관련 법인·단체”의 경우 마목이나 바목과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삭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섯째, 안 제2조제5호는 “지역과학기술인”을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지역 밖에 거주하면서 지역 내에 소재한 연구기관 등에 근무하는 과학기술분야 연구 종사자의 경우도 지역과학기술인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는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¹⁵⁾

동 법의 제정 취지는 지역과학기술혁신에 있는 것이므로, 과학기술인이 지역과학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 활동을 하거나 지역의 기업 또는 산업에 종사한다면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지역과학기술인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안 제21조에서는 지역과학기술인 정주여건의 개선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과학기술인이 지역으로 정착하여 지역과학기술혁신활동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15)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법의 취지는 지역의 연구역량을 확충하여 우수한 인재가 지역에 정착하는 선순환을 구현하는 것으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지역과학기술인으로 정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임.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에 거주 중이지 않은 과학기술인을 전제로 한 조항으로 보임.

여섯째, 안 제2조제5호는 “이학·공학 등의 분야와 이와 관련되는 학제 간 융합분야”를 ‘과학기술 분야’로 약칭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4호마목에 ‘과학기술 분야’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바, 같은 의미라면 제2조제4호마목에서 약칭할 필요가 있음.

일곱째, 안 제2조제5호 중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은 같은 조 제1호에서 “시·도”로 약칭하였으므로 ‘시·도’로 자구 수정이 필요하고, ‘기술혁신 활동’이 의미하는 바가 같은 조 제2호에서 정의한 “지역과학기술혁신”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제2호의 개념을 활용하여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음.

여덟째, 제정안에서는 “연구개발사업”이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바, 용어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안 제17조제3항에서는 “연구개발사업”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의미하고, 안 제12조제4항에서는 “연구개발사업”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의미하는 등 혼용되고 있으므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을 구별하여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3조·제4조)

1) 제정안의 내용

안 제3조제1항은 국가의 책무,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항은 지역과학기술혁신주체의 책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고, 제4조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지역과학기술혁신에 필요한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연구개발 및 그 성과의 확산을 지원하는 등 지역과학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정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과학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재정 지원 및 규제 완화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지역과학기술혁신 주체는 해당 주체가 수행하고 있는 지역과학기술과 관련된 사업 또는 활동을 연계하여 그 성과를 효과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여야 하며, 지역과학기술혁신 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역과학기술혁신 촉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검토의견

안 제4조는 이 법이 지역과학기술혁신에 관한 일반법의 지위를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서 특구 내 전

문 연구개발 인력 등의 양성,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지원, 산학연 협력을 통한 산업기술인력의 양성 등 사실상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연구개발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 사항들은 제정안의 지역거점연구기관의 육성(제15조), 지역 내 산학연 간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및 재교육(제18조 및 제20조) 등과 중복될 여지가 있음.

제정안은 이 경우 해당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개발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우선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의 해석·집행상의 모순이나 저촉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그 외 안 제3조제2항의 ‘지역과학기술 혁신’은 ‘지역과학기술혁신’으로, 안 제4조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로 자구 수정이 필요함.

2. 제2장 지역과학기술혁신 추진체계

가.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안 제5조·제6조)

1) 제정안의 내용

안 제5조는 시·도지사가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 및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6조는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 등의 추진에 필요한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5조(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의 수립 및 조정)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의 특성 있는 혁신과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과 연계한 관할구역 내의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이하 “지역혁신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제9조에 따른 지역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지역혁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과학기술혁신의 목표, 방향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의 발전과 혁신을 위해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기술(이하 “지역중점기술”이라 한다)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투자 목표, 재원 확보 및 투자 전략에 관한 사항 4. 지역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과학기술 관련 주체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6. 지역 내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7. 연구시설·장비 구축 및 운영, 과학기술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등 지역 과학기술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8. 제19조에 따른 지역과학기술 집적단지의 육성에 관한 사항

제 정 안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시·도지사는 지역혁신계획의 연도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9조에 따른 지역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가 지역혁신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시·군·구, 지역과학기술혁신 주체 및 지역과학기술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혁신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마련하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지역혁신계획 및 실행계획에 대하여 정부의 과학기술정책과 상충되거나 다른 시·도의 지역혁신계획 및 실행계획 등과 중복·충돌하는 경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7조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도지사에게 지역혁신계획 및 실행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⑦ 제6항의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⑧ 제5항의 기본지침, 제6항에 따른 지역혁신계획 및 실행계획의 조정 및 그 밖에 지역혁신계획과 실행계획의 수립과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지역혁신계획의 추진 등) ① 시·도지사는 지역혁신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역과학기술혁신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
- 2.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 3.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세의 징수유예
- ② 정부는 시·도지사가 지역혁신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혁신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지역혁신계획을 수립하는데 필

제 정 안

요한 조사·연구,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는 매년 지역혁신계획의 추진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혁신계획 추진실적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7조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에 제출하고,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시·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분석 결과를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지역혁신계획의 추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검토의견

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첫째, 안 제5조는 시·도지사가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 및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과학기술” 중에서 “공통의 기술적·산업적·경제적·사회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 및 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 주체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있음.

둘째,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 및 연도별 실행계획의 변경 절차에 대한 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안 제5조제6항은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 및 연도별 실행계획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조정 요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계획의 조정은 계획변경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변경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음.

계획의 수립 시 지역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변경도 지역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셋째, 안 제5조제2항제5호는 “지역과학기술 관련 주체”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을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역과학기술 관련 주체”가 안 제2조제4호의 “지역과학기술혁신 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정의 조항을 활용하여 “지역과학기술혁신 주체”로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넷째, 안 제6조제3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① 지역혁신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②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제정안의 다른 조항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

같은 조 제2항에 근거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부에 포함되므로 ①의 경우 당연히 가능하고, ②의 경우 역시 안 제25조16)에 근거한 지역과학기술 관련 규제 등의 개선 절차를 통하여 가능한 것으로 보임.

16) 「지역과학기술혁신법안」(의안번호 제2122544호, 김영식의원 대표발의)

제25조(지역과학기술 관련 규제 등의 개선) ① 시·도지사는 지역과학기술혁신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점검·발굴하여 이를 완화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과학기술과 관련된 국내외 환경변화에 맞게 제도나 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

다섯째, 안 제6조제6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시·도지사의 혁신계획 추진실적을 분석하여 제출한 결과는 정책적인 의사결정의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 결과를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에서 심의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¹⁷⁾

안 제6조제7항에서 시·도지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분석한 결과를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 시 반영하도록 의무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분석 결과는 단순히 추진실적 분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인 의사결정의 효과를 가질 것으로 보임.

17)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혁신계획의 추진실적 분석은 각 지역에서 제출한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및 분석 결과와 시사점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정책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심의까지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임.

나. 지역과학기술 투자 확대 및 지역과학기술 중장기 투자 혁신 전략 수립(제7조·제8조)

1) 제정안의 내용

안 제7조는 지역과학기술 관련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안 제8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역과학기술 중장기 투자 혁신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7조(지역과학기술 투자 확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도로 지역 과학기술혁신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과학기술 관련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재정 여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예산의 일정 비율을 지역과학기술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지역과학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전략적 투자 및 효율적인 사업 관리를 위하여 시·도가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 및 시·도가 예산을 부담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 투자 목표를 달성한 시·도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 투자 목표와 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리하여야 하는 연구개발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지역과학기술 중장기 투자 혁신 전략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및 이 법 제5조에 따른 지역혁신계획과 연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위하여 5년 단위의 지역과학기술 중장기 투자 혁신 전략(이하 “지역중장기투자혁신전략”이라 한다)을 세우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지역중장기투자혁신전략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경우도 이

제 정 안

와 같다.

② 지역중장기투자혁신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과학기술혁신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효율화 방안
2. 제12조에 따른 지역연구개발사업, 지역주도사업, 초광역협력 연구개발사업 투자 효율화 방안
3. 제24조에 따른 지역과학기술정보 등에 관한 통계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과학기술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전략적 투자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검토의견

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첫째, 안 제7조제2항은 시·도지사에게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일정 비율을 지역과학기술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목표치를 세우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약하거나 과학기술혁신역량이 부족한 지역¹⁸⁾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안 제8조제1항의 “지역과학기술 중장기 투자 혁신 전략”을 현행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과 별도로 구별해서 세우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함.

① 양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5년을 주기로 세운다는 점 ② 지역과학기술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중장기 투자 혁신 전략을 독립적

18)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발간한 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보고서에 따를 때, 서울, 경기, 대전을 제외한 대다수의 지역은 과학기술혁신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으로 세우도록 하는 것은 현행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의2¹⁹⁾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장기 투자전략과의 체계 문제도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활용하여 그 내용을 담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셋째, 안 제8조제1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역과학기술 중장기 투자 혁신 전략을 세우도록 하고 있는데, 지역과학기술과 관련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절차를 둘 필요는 없는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의2는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 전략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세우도록 하고 있음.

넷째, 안 제8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위하여 5년 단위의 지역과학기술 중장기 투자 혁신 전략을 세우도록 하고, 지역과학기술 중장기 투자 혁신 전략에 “지

19)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의2(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2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 단위의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이하 “중장기투자전략”이라 한다)을 세우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 중장기투자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의 중장기 투자 목표 및 방향
2. 국가연구개발의 분야 및 추진단계별 투자재원 배분 방향
3. 국가연구개발사업과 민간의 연구개발사업 간의 역할 분담 방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장기투자전략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투자의 방향과 기준을 포함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장기투자전략을 과학기술분야의 정책의 수립, 사업의 추진 및 예산의 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중장기투자전략 및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역주도사업”의 투자 효율화 방안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안 제12조제4항에 따르면 지역주도사업이란 “지역의 연구역량 강화와 특성 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이 주도하는 연구개발사업”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보임.

따라서, 지역과학기술 중장기 투자 혁신 전략에 지역주도사업 투자 효율화 방안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다. 지역과학기술위원회, 전담기관, 정책연구센터 등(제9조·제10조·제11조)

1) 제정안의 내용

안 제9조는 시·도에 지역과학기술위원회를 두도록 하려는 것이고, 안 제10조는 시·도지사가 지역별 과학기술 전담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안 제11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역과학기술 정책연구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9조(지역과학기술위원회) ① 시·도지사는 지역과학기술혁신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지역과학기술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역혁신계획 및 실행계획 2. 지역과학기술혁신 관련 주요 정책 및 사업 3. 지역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재원의 확보 및 투자전략, 예산 배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지역과학기술혁신 기반의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지역과학기술혁신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며, 위원은 지역과학기술혁신 관련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한 사람이 된다. ⑤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역위원회의 심의·조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 정 안

제10조(지역별 과학기술 전담기관) ① 시·도지사는 지역과학기술혁신에 관한 정책·사업의 기획 및 관리, 조사·연구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역별 과학기술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지역과학기술혁신 주체 중에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 제6조에 따른 지역혁신계획의 수립 및 조정, 추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지역과학기술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12조에 따른 지역연구사업 및 지역주도사업 추진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17조에 따른 지역기업연구소 육성 및 유치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제19조에 따른 지역과학기술 집적단지의 연계·협력 및 활성화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제20조에 따른 지역과학기술인 양성 및 활용 촉진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제24조에 따른 지역과학기술정보 생산 및 유통체계 구축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과학기술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사항

③ 전담기관은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담기관의 설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드는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 전담기관의 설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지역과학기술 정책연구센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과 이 법 제5조에 따른 지역혁신계획을 비롯한 지역과학기술혁신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마련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와 각종 데이터의 분석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책·사업 컨설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과학기술 정책연구센터(이하 “정책연구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정 안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책연구센터가 조사·연구, 데이터의 분석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책연구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정책연구센터의 지정기준·절차, 운영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검토의견

제정안은 지역과학기술위원회 설치, 지역별 과학기술 전담기관 설치 또는 지정, 지역과학기술 정책연구센터 지정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수단을 마련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는 17개 시·도에서 각각 지역과학기술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위원 20명을 위촉하여 매년 4회씩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전제로 재정소요를 연간 약 3억 4,000만원으로 추계함.

지역과학기술위원회 설치·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4~2028년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2027	2028	합 계
지역과학기술위원회 설치·운영(안 제9조)	340	340	340	340	340	1,700

자료: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다만, 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첫째, 안 제9조는 시·도지사가 지역과학기술혁신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지역과학기술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과학기술” 중에서 “공통의 기술적·산업적·경제적·사회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 정책이나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위원회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있음.

둘째, 안 제10조는 지역별 과학기술 전담기관의 설치 또는 지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도 규정할 필요가 있음.

다. 지역연구개발사업 등(안 제12조·제13조·제14조)

1) 제정안의 내용

안 제12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 지역과학기술 정책과의 부합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지역연구개발사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지역이 주도하는 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초광역협력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3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역과학기술인 및 지역과학기술혁신 주체 간 다양한 협력활동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고, 안 제1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지역과학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내용 및 투자분담 등이 포함된 지역과학기술 투자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12조(지역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기초법」 제8조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과 이 법 제5조에 따른 지역혁신계획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 지역과학기술 정책과의 부합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지역연구개발사업(이하 “지역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연구사업에 대한 투자의 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 등에 있어서 지역연구사업에 특화된 평가방안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지역연구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

제 정 안

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이하 “수도권 외의 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지역과학기술 관련 주체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의 연구역량 강화와 특성 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이 주도하는 연구개발사업(이하 “지역주도사업”이라 한다)을 기획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역주도사업 중 성과가 우수한 사업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초광역권의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초광역협력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평가, 제4항에 따른 지역주도사업 및 제6항에 따른 초광역협력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지역 간의 과학기술 협력 촉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 간의 지식·정보의 공유, 기술협력 및 융합 등을 위하여 지역과학기술인 및 지역과학기술혁신 주체 간 다양한 협력활동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지역과학기술 투자협약)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지역과학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내용 및 투자분담 등이 포함된 지역과학기술 투자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체결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필요한 예산의 편성 등 협약을 이행하고 협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의 수립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에 있어서 제1항에 따른 협약을 반영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협약의 체결, 내용 및 사업범위, 협약 체결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검토의견

안 제13조와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과학기술 협력 촉진을 위하여 지역 간 교류 행사를 개최한다는 전제로, 분기별 1회 개최 시 연 8,000만원 가량의 재정 소요가 있을 것으로 추계하였음.

지역 간의 과학기술 협력 촉진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4~2028년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지역 간의 과학기술 협력 촉진(안 제13조)	80	80	80	80	80	400

자료: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제정안과 관련해서는 다음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첫째, 안 제12조제1항의 “지역연구사업”의 정의가 불명한 측면이 있음.

제정안에서는 “지역연구사업”을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 지역과학기술 정책과의 부합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개발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배분·조정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안 제12조제5항에 따라 지역연구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거쳐 성과가 우수한 사업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은 과학기술혁신 역량이 우수한 지역과 부족한 지역간의 편차를 확대시키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안 제12조제2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마련·수행하는 지역연구사업에 특화된 평가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성과평가²⁰⁾와의 관계에 대해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넷째, 안 제12조제3항의 “지역과학기술 관련 주체”가 안 제2조제4호의 “지역과학기술혁신 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정의 조항을 활용하여 “지역과학기술혁신 주체”로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20)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평가실시계획에 따라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중간 성과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를 실시하기 전 매년 당해 연도 성과평가실시계획에 따라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자체평가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자체평가의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자체평가가 제6조제1항의 사업 전략계획과 제2항의 자체평가실시계획에 따라 실시되었는지 여부 및 결과의 적절성을 점검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한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의 장은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의 실시, 제2항에 따른 자체평가실시계획의 수립, 제4항에 따른 자체평가 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특정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한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특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장기간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2. 사업 간 중복조정 또는 연계가 필요한 사업
 3.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4. 국가적·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된 사업
 5. 제7조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 심층적인 평가가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특정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평가의 방향·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특정평가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평가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정평가의 결과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⑥ 특정평가의 실시와 그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섯째, 안 제12조제4항의 “지역이 주도하는 연구개발사업”에서 지역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지역은 공간적인 개념이므로 지역이 연구개발사업을 주도하는 것은 부적절한 표현임.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 내의 기업 등이 주도하는 연구개발사업”으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지역이 주도하는 연구개발사업’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이라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아닌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규율 형식에 부합할 것으로 보임.

여섯째, 안 제14조제1항은 지역과학기술 투자협약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조제3항에서는 투자협약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에 반영할 수 있게 하고 있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협약을 맺도록 하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의결까지 거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임.

또한, 국가 또는 지자체의 예산편성이 협약 내용에 기속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가 필요함. 해당 부분이 국회나 지방의회의 예산심사 권한을 제약하는 부분은 없는지도 검토가 필요할 사항으로 보임.

3. 제3장 지역과학기술혁신 관련 주체의 육성 등

가. 지역공공연구기관, 지역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지역기업연구소 등(안 제15조·제16조·제17조·제18조)

1) 제정안의 내용

안 제15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공공연구기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하여 해당 시·도에 소재하는 지역공공연구기관 가운데 지역거점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6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대학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거점연구기관이 소재하는 시·도의 대학에 협력연구단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안 제17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18조는 지역 내 산학연 협력의 촉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15조(지역공공연구기관의 육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공공연구기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하여 해당 시·도에 소재하는 지역공공연구기관 가운데 지역거점연구기관(이하 “거점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지역 내 연구개발, 연구인력의 활용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 정 안

1. 지역중점기술과 관련한 원천, 응용기술 개발 및 사업화
2. 지역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문제의 해결
3. 지역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4. 우수한 지역 연구인력의 양성 및 활용 촉진
5. 연구시설·장비의 구축, 운영, 개방 및 활용 지원
6. 지역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산·학·연 협력연구 및 네트워크 운영
7. 그 밖에 지역과학기술 혁신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연구사업 및 지역주도사업 추진 시 거점연구기관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

④ 지역공공연구기관은 소재지의 시·도에 소재한 대학, 기업과 협력연구 및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등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거점연구기관은 매년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하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거점연구기관은 소재하는 시·도의 이공계인력을 위해 연수기회를 제공하거나 채용하는 등 소재하는 시·도의 이공계인력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⑦ 시·도지사는 거점연구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⑧ 제2항에 따른 거점연구기관의 지정 및 지원, 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지역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 지역 대학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거점연구기관이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기초, 원천연구 및 연구인력 양성 등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거점연구기관이 소재하는 시·도의 대학에 협력연구단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중점기술과 관련된 기초 및 원천연구
2. 지역의 연구역량 확충을 위한 기초연구
3.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4. 연구인력의 안정적 연구 활동을 위한 지원사업

제 정 안

③ 제2항에 따른 협력연구단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지역기업연구소의 육성 및 유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연구소(이하 “지역기업연구소”라 한다)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술개발·기술 도입 및 도입 기술의 개량에 관한 조사·연구
2. 신규 연구개발인력의 확보 및 재직 연구개발인력의 유지를 위한 교육훈련·연수 및 재정 지원
3. 연구시설·장비의 공동 활용
4. 특허 및 기술동향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분석
5. 그 밖에 지역기업연구소의 기술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에 있는 지역기업연구소가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을 하거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 및 산업 환경 변화에 따라 지역기업연구소가 직면한 공통의 기술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18조(지역 내 산학연 협력의 촉진 등) ① 시·도지사는 거점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관할 시·도 내의 산학연 간의 개방과 협력을 촉진하고, 대학과 연구기관의 연구성과가 지역 기업 및 산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협동·융합연구 및 기술개발
2. 인력, 정보 등의 교류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3. 연구시설·장비 등의 공동 활용 및 서비스 지원
4. 기술이전, 연구성과의 검증, 산·학·연 협력 기술사업화 및 창업의 지원
5.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및 재교육

제 정 안

6. 그 밖에 산·학·연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산·학·연 간의 개방과 협력을 위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기획하여 수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존에 추진 중인 연구개발, 사업화 지원, 과학기술 인력양성, 연구시설·장비의 구축·활용 등의 사업을 연계하거나 통합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공공연구기관과 지역 대학이 지역기업의 기술 문제 해결과 기술 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검토의견

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첫째, 제3장의 제목의 “지역과학기술 관련 주체”가 안 제2조제4호의 “지역과학기술혁신 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정의 조항을 활용하여 “지역과학기술혁신 주체”로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둘째, 안 제15조제2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역공공연구기관 가운데 지역거점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지역과 관련한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공공연구기관 중에는 국가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국가 차원의 목표를 가지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관들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들이 지역거점연구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본연의 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도 배제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또한, 같은 조 제5항에서 거점연구기관은 매년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을 시·도지사과 협의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거점연구기관 본래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계획까지 시·도지사과 협의하여 수립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시·도지사과 협의하여 수립하는 사업의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²¹⁾

넷째, 안 제15조제3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연구사업 및 지역주도사업 추진 시 거점연구기관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 조항이 사업추진 주체 선정 시 거점연구기관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면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안 제15조제6항에서 거점연구기관은 소재하는 시·도의 이공계인력을 위해 연수기회를 제공하거나 채용하는 등 소재하는 시·도의 이공계인력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동 조항은 수도권 지역을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역인재 채용 우대 시 수도권 지역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다른 국가 정책들과의 일관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²²⁾

21)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조항은 국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본연의 업무에 더하여 지역의 혁신을 위한 기능 및 역할을 추가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어 본연의 업무 수행을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사업계획까지 시·도지사과 협의하여 수립할 필요가 있는지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2)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의2(지방인재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지방인재의 공무원 임

여섯째, 안 제17조는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만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조문들은 대부분 ‘수도권 지역’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어 어떤 기준으로 ‘수도권지역’ 포함 여부를 결정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제정안의 다른 조문들 중 제13조제3항에서만 국가가 지역연구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지역과학기술 관련 주체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도권 지역과 그 외 지역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음.

일곱째, 안 제17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에 있는 지역기업연구소가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역기업연구소는 같은 조 제1항에서 따라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할 것을 전제로 하는 개념임. “수도권에 있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오기인 것으로 보임.

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3조, 제23조의3, 제23조의4 및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시험에서 한시적으로 지방인재가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합격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지방인재”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대학의 졸업(예정)자 또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인재를 합격시키는 경우 그 적용대상, 채용목표 비율,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4. 제4장 지역과학기술혁신을 위한 기반 및 환경 조성

가. 지역과학기술 집적단지·지역과학기술인에 관한 사항(안 제19조·제20조·제21조)

1) 제정안의 내용

안 제19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과학기술 집적단지를 활성화하거나 집적단지 상호 간의 연계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0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역과학기술인 양성 및 활용 촉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안 제21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과학기술인이 지역으로 정착하여 지역과학기술혁신활동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주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제 정 안
제19조(지역과학기술 집적단지 활성화 및 연계·협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과학기술 집적단지(이하 “집적단지”라 한다)를 활성화하거나 집적단지 상호 간의 연계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집적단지 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촉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2. 집적단지 간 연계와 협력을 통한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사항 3. 대학·연구소·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사항

제 정 안

4. 연구장비·시설 등 기반의 구축·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 산업 및 기술 분야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6. 집적단지에 입주한 대학·연구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의 확보에 관한 사항
 7. 신기술·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8. 주거, 교통, 교육, 문화생활 등 정주여건의 개선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집적단지의 활성화 및 연계·협력을 위한 사항
-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 및 기술 분야가 유사한 타 지방자치단체와 집적단지 간 연계·협력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할 수 있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집적단지의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시 타 집적단지와 중복 여부 및 연계·협력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 내 집적단지의 활성화 및 집적단지 상호 간의 연계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실태조사, 진단 및 평가, 컨설팅 등을 수행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 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진단 및 평가, 컨설팅 등의 결과를 해당 집적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정책 추진 시 고려하여야 한다.
- ⑥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그 밖에 집적단지의 활성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지역과학기술인 양성 및 활용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의 변화와 발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창의력 있고 다양한 재능을 가진 지역과학기술인을 양성·개발하고, 지역과학기술인이 지역에 정착하여 지속적,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전주기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역과학기술인의 중·장기적 수요 및 공급 전망의 수립
2. 지역과학기술인의 양성 및 공급계획 수립
3. 지역과학기술인에 대한 교육훈련, 재교육의 촉진

제 정 안

4. 지역과학기술인 양성을 위한 교육의 질적 강화방안 수립
 5. 지역과학기술인을 위한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연구기반 구축 및 연구활동 지원
 6. 지역과학기술인의 지역 내 취업·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7.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의 지역 유치 및 정착을 위한 지원
 8. 그 밖에 지역과학기술인의 양성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 및 산업 환경 변화에 따라 필요한 지역과학기술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지역공공연구기관과 지역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 연수, 학생 및 교원의 교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지역공공연구기관과 지역기업연구소는 신규 연구개발인력 채용 시 소재지의 시·도에 소재한 대학의 학생이나 졸업생을 우대하여 채용하는 등 해당 지역 인재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지역 인재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한 지역공공연구기관과 지역기업연구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을 하거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지역과학기술인 정주여건의 개선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과학기술인이 지역으로 정착하여 지역과학기술혁신활동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과학기술인을 위한 주거·교육·문화생활에 필요한 정주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과학기술인의 정주여건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고용보험법」 제20조에 따른 고용창출의 지원
2. 「근로복지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근로자주택공급제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주택구입자금등의 융자, 같은 법 제2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3.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4.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4조제2호에 따른 공동숙박시설의 지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장기 재직자의 주택 입주 지원
5. 그 밖에 지역과학기술인의 주거·교육·문화생활 등을 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검토의견

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첫째, 안 제20조에서는 “지역과학기술인의 중·장기적 수요 및 공급 전망의 수립”, “지역과학기술인의 양성 및 공급계획 수립”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역 간의 거주이전이 자유롭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과학기술인력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단위로 양성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²³⁾

둘째, 안 제20조제3항에서 지역공공연구기관과 지역기업연구소는 신규 연구개발인력 채용 시 소재지의 시·도에 소재한 대학의 학생이나 졸업생을 우대하여 채용하는 등 해당 지역 인재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수도권 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지역인재 채용 우대 시 수도권 지역은 제외하는 다른 국가 정책들과 일관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안 제21조제2항 각 호의 지원은 각 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불필요한 조항으로 보임.

23)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로 인하여 지역은 인재 부족이 심각한 상황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법에서는 지역 과학기술인의 양성 및 활용 촉진, 정착을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바, 지역별로 직면한 인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 단위에서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임.

나. 지역과학기술 교육·문화, 지역문제 해결, 지역과학기술정보유통 체계, 규제 개선에 관한 사항(안 제22조·제23조·제24조·제25조)

1) 제정안의 내용

안 제22조는 지역과학기술 교육·문화 확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안 제23조는 시·도지사가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시·도가 직면한 경제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도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24조는 지역과학기술정보 생산 및 유통체계 구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안 제25조는 시·도지사가 불필요한 규제의 완화나 제도 개선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도나 규정을 정비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22조(지역과학기술 교육·문화 확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 및 주민들을 위한 과학기술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주민과 지역 사회의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23조(과학기술을 활용한 지역문제 해결) ① 시·도지사는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도가 직면한 경제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 정 안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시·도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할 수 있다.
- ④ 정부는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지역과학기술정보 생산 및 유통체계 구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역과학기술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역과학기술혁신에 필요한 지역과학기술정보 생산 및 유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과학기술정보 등에 관한 통계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과학기술정보 등에 관한 통계 및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통계조사”라 한다)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지역과학기술과 관련된 기관·단체 등(이하 이 조에서 “중앙행정기관의장등”이라 한다)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지역의 산업 진흥과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과학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정책 및 사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역과학기술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지역과학기술 관련 지식·정보의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과학기술정보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지역과학기술정보유통체계는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의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체계와 연계되어야 한다.

⑥ 지역과학기술정보유통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관련 기업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 제3항에 따른 수요조사, 제4항에 따른 지역과학기술정보유통체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지역과학기술 관련 규제 등의 개선) ① 시·도지사는 지역과학기술혁신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점검·발굴하여 이를 완화하거나

제 정 안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과학기술과 관련된 국내외 환경변화에 맞게 제도나 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

2) 검토의견

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첫째, 안 제22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 및 주민들을 위한 과학기술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주민과 지역 사회의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데 동 사항은 현행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²⁴⁾에 의하여 이미 추진 중인 것으로 보임.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주체는 교육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나 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도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조항의 취지는 상대

24)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 ①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식 수준을 높이고 과학기술이 국민생활 및 사회전반에 널리 이용되며 국민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고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문화활동 및 창의적 인재 육성을 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과 단체를 육성·지원한다.

1.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

2.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창의재단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과학기술문화활동 관련 기관 또는 단체

③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 ⑧ (생략)

적으로 과학기술 교육 및 문화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수도권 외 지역의 접근성 및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이므로 동 조항의 취지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조문 수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둘째, 안 제24조제1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역과학기술정보 생산 및 유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시·도지사는 “지역과학기술정보유통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는데 서로 다른 정보유통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인지, 만약 같은 것이라면 구축의 주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인지 시·도지사인 것인지 모호함.

셋째, 안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제도개선 건의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처리 절차를 타 입법례를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에서는²⁵⁾ 규제개선 신청 및 처리절차에 대하여 자세하게 규

2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① 전략산업등 관련 기업은 전략산업등과 관련된 연구개발, 시험·평가, 검증 및 생산 활동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활동에 필요한 규제개선(이하 이 장에서 “규제개선”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정비가 필요하지 아니한 신청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개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신청기업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45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정하고 있음.²⁶⁾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심의 결과를 통보하고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속히 관련 법령의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연구개발, 시험·평가, 검증 등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 및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의 절차에 따라 관련 규제에 관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의 특례에 대해서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같은 법 제72조 및 제81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특례 관련 사항을 신청할 수 있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회신한 답변 또는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규제개선을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와 관련한 세부사항 및 규제개선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6)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자체의 규제개선 건의 및 이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처리절차는 행정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상세히 규정할 필요성은 낮다는 의견임.

5. 제5장 보칙 등

가. 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벌칙
(안 제26조·제27조·제28조)

1) 제정안의 내용

안 제26조부터 제28조는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 벌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26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전문 능력과 인력을 갖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0조에 따른 전담기관의 임원 및 직원, 제11조에 따른 정책연구센터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8조(벌칙) 제24조제6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검토의견

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첫째, 안 제26조의 조 제목은 “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인데, 내용은 업

무의 위탁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 제목을 “업무의 위탁”으로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임.

둘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²⁷⁾에 따라 행정기관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을 포함하는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으므로 안 제26조제2항은 불필요한 조항으로 보임.

셋째, 안 제27조는 제10조에 따른 전담기관 및 제11조에 따른 정책연구센터의 임직원만을 공무원 의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9조에 따른 지역과학기술위원회 위원이나 안 제2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업무 일부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등까지도 공무원 의제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넷째, 안 제27조에서는는 적용벌칙의 범위를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²⁸⁾로 규정하고 있는데, 「형법」 제127조²⁹⁾ 공무상 비밀누

27)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8)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

설죄에 대해서도 공무원 의제를 하는 것이 필요한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229

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 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29)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의결(보고)주문

-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2023~2027)(안)」을 별지30)와 같이 의결함

2. 제안이유

-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역 주도 과학기술 혁신과 이를 통한 지역의 자생력 회복을 위한 범부처 중장기 계획인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2023~2027)」을 수립·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추진배경

- 지방소멸 위기, 디지털 전환 등의 변화 및 새 정부 국정과제 등을 반영한 지역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6차 종합계획 수립

☐ 지역 과학기술 현황 진단

- **(성과)** R&D 투자 확대 등을 통한 지역 산업 혁신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지자체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 지속 증가

* 광주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인공지능 전문대학원 확대, 신산업 규제자유특구 확대, 산업단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등

- **(한계)** 그 간 투자에도 불구하고 지역 산업·경제 경쟁력은 수도권에 미치지 못하며, 수도권과 지역 간 과학기술 역량 격차* 지속

* 수도권·대전 비중('20년) : 인구 53%, GRDP 55% ⇔ R&D투자 79%,

30) 분량상 별지는 생략함

연구원 72%, R&D조직 68%, 특허출원 69%

-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사업 추진으로 투자의 효과성이 낮으며, 분산된 지원으로 지역 혁신의 구심점인 대학, 연구기관이 부재

□ 비전 및 전략

- (비전) 과학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지역 주도 균형발전 시대 개막
- (목표) 지역의 강점 및 수준을 고려한 고유의 성장경로를 설정하여 자생력 높은 지역혁신생태계 구축
- (추진전략) ①지역이 주도하는 과학기술 혁신 추진체계 구축, ② 지역 혁신주체의 성장·연계를 통한 지역 혁신 가속화, ③지역 혁신을 뒷받침하는 민간 주도의 생태계 활성화

□ 중점 추진과제

【 1. 지역이 주도하는 과학기술 혁신 추진체계 구축 】

① 지자체 주도, 중앙정부 지원의 과학기술 거버넌스 강화

- 지역별 과학기술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과학기술 정책 의사결정 기구로 위상을 강화
- 지역이 제안한 정책·사업을 종합·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서 지자체-중앙정부 간 “지역과학기술전략회의”^{*} 신설

*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 17개 시·도 부단체장, 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산업부·중기부 실장급 공무원 참여

②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 정책기획 기능 및 역량 강화

-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맞춰 지자체 주도로 지역 특성·역량 등을 진단하여 “지역별 중장기 과학기술 혁신계획” 수립

- BISTEP 등 현재 8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과학기술정책 전담기관을 확대하고, 정책 기획, 조사·분석 등의 기능 강화

* 부산, 대전, 경기, 광주, 강원, 충북, 충남, 경북에서 자체 기관 운영 중

③ 지역 주도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평가 등 지원체계 혁신

- 지역 R&D 범위 확장 등을 통해 지역 R&D 투자의 비중을 확대하고, 지역성 평가 도입 등을 통해 투자의 전략성 강화
 - 지자체-중앙정부 간 협의된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분함으로써 지역이 희망하는 R&D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체계 구축
- 지자체의 자체 R&D 투자 목표제를 도입하고, 목표를 달성한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지자체의 R&D 투자 촉진
- 지속적, 안정적인 지역 과학기술 정책·사업 기반 마련을 위한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 추진

【 2. 지역 혁신주체들의 성장·연계를 통한 지역혁신 가속화 】

① 지역 대학, 출연(연)의 거점화, 임계규모 확보로 지역혁신 선도

- 지역거점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 전략산업·기술과 연계한 핵심기술연구단 설치 등을 통해 기술 기반 지역 혁신 촉진
- 지역 특화 선도연구센터(RLRC) 확대, BK21+의 지방대학 비중 확대 등을 통해 지역 거점대학 중심으로 기초연구 지원 강화
- 산재된 출연(연) 지역조직을 혁신역량 기준으로 선정하여, 지역이 직면한 이슈 해결을 위한 임무지향형 거점연구소로 개편

※ 지역 내 우수 연구인력 확보·유지를 위한 지역인재 채용 연계 추진

② 지역의 교육, 연구와 산업 간 간극 해소

- 원천기술 확보 및 기술이전·창업 중심의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

고, 관련 사업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혁신을 촉진

* 산학연 협력 촉진(지역 거점대학, 출연(연) 간 협력 강화, 기술 확보 프로젝트 추진) → 산학연 거점조성(산학연 집적을 통해 협력 강화)

○ 지역대학 교육 혁신 등을 통해 지역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실무, 고급인재 양성 및 지역 인재의 정착 지원

※ 이노베이션 스퀘어(디지털 기술 교육기관) 및 A대학원 확대, 지역별 연구 거점 구축, 산학 공동연구 확대 등을 통한 연구인력 대상 안정적 일자리 제공

③ 지역별 과학기술 역량을 활용한 지역 기업, 산업 경쟁력 제고

○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 대학, 연구기관 간 연계를 통해 3단계 “지역 유니콘 창출 프로젝트”* 추진

* (1단계) 비즈니스모델, 기술타당성 검증(지자체, 단기 지원) → (2단계) 우수기업 지원(정부, 중기·대규모 지원) → (3단계) 민간 투자유치 지원

○ 기업 수요, 역량진단을 기반으로 지역 대학, 출연(연) 등과 매칭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 기업의 강소기업 도약 촉진

* (현장 애로기술) - 전문(연) 중심 공정개선 등 지원 / (핵심 원천기술) - 출연(연) 중심 핵심기술 협력연구 / (미래기술) - 거점대학 중심 장기 협력연구

○ 산학연 간 협력연구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기업의 제조 혁신, 디지털 전환 및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업종 고도화 등 촉진

【 3. 지역 혁신을 뒷받침하는 민간 주도의 생태계 활성화 】

① 우수 지역 혁신클러스터 발굴 및 육성

○ 초광역 또는 분야별 클러스터의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주도 협력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지역의 기술혁신 촉진

* (예) 부울경(저탄소 그린에너지), 충청(미래 모빌리티 부품), 대구경북(바이오메디컬), 호남(분산에너지)

- 청년이 선호하는 지역도심 중심으로 디지털 혁신거점, 산학연 협력거점을 조성, 연계하여, **R&D, 창업, 정주여건 개선** 등 지원
- 지역 기업에 신기술이 정착,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 연구개발특구 등과 연계한 **R&D, 실증, 규제특례·개선 패키지** 지원

②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 인프라 고도화

- 지역 대학, 연구기관의 창업·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교원·연구원의 기업·창업 겸직 활성화, 평가지표 개선 등 추진
- 청년 연구인력의 지역 중소기업 장기 근속 및 지역 연구기관, 혁신기업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지원 제도* 마련

* (예) 정부연구개발사업 선정 시 지역인재 채용 기업에 대한 가점 부여 등

③ 지역의 과학기술 및 디지털 교육·문화 저변 확대

-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과학기술, 디지털 교육·체험 프로그램* 확대 및 선도적 스마트서비스 개발·보급 등 지원

* 시·군·구 생활과학교실, 디지털배움터, 찾아가는 SW교육 등

-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지역현안을 발굴하고, 과학기술 및 **SW**를 활용하여 해결하는 리빙랩 활성화

4. 참고사항

☐ 관계부처 협의 완료('22.10~11월)

☐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사전검토 완료('22.12.1)



지역 과학기술혁신 역량평가

▶ 지역 과학기술혁신 역량(R-COSTII)

- 지역이 과학기술분야의 혁신과 개선을 통해 경제적·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성과를 산출할 수 있는 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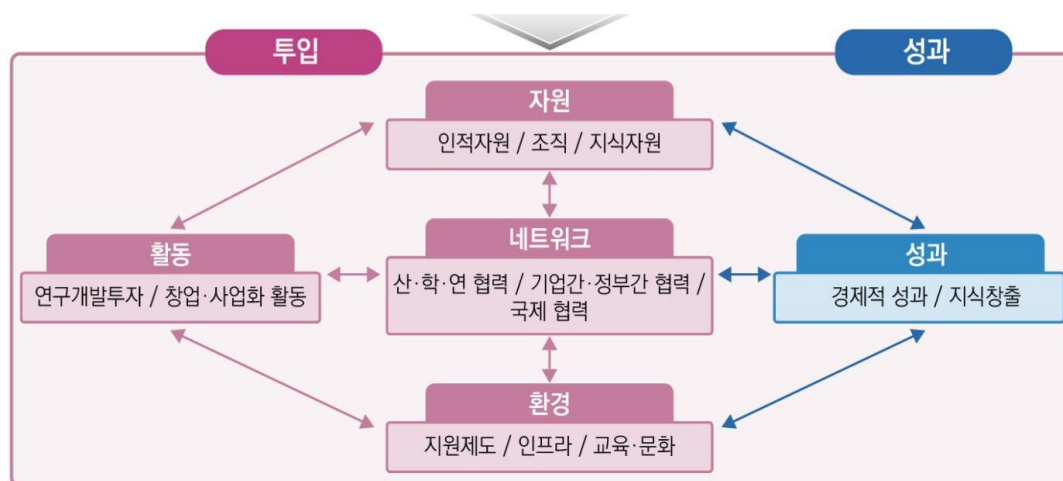
▶ 지역 과학기술혁신 역량평가

- 지역 과학기술혁신 역량평가는 국가 혁신 체제*(NIS : National Innovation System)의 기본 틀에 기초하여 투입 → 활동 → 성과에 이르는 전주기적 활동을 포괄적으로 점검
 - * 국가혁신체제(NIS) : 특정 국가 내에서 새롭고 경제적으로 유용한 지식의 창출과 확산, 활용을 위하여 상호 작용하는 구성요소와 관계의 집합³¹⁾
- 지역 과학기술혁신 역량평가 모형은 각 지역의 자원 투입에서 최종 경제적 성과에 이르는 전 과정을 5개 부문*(대분류)으로 구조화하여 평가·분석
 - * 5개 부문(대분류) : 자원 부문, 활동 부문, 네트워크 부문, 환경 부문, 성과 부문



평가 모형

- ▶ 지역 과학기술혁신 역량평가의 지표 체계는 5개 부문(대분류), 13개 항목(중분류), 31개 지표(소분류)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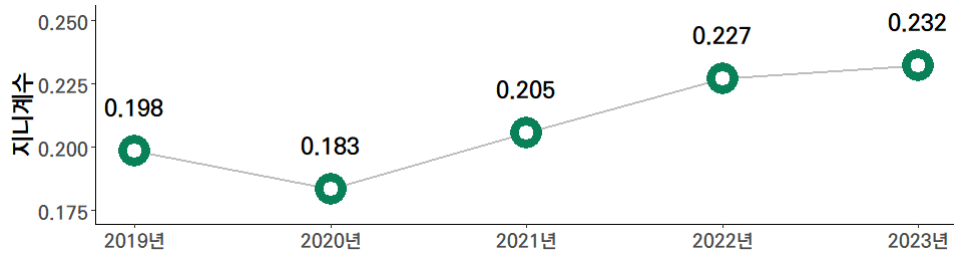


<그림 1-2-2> 지역 과학기술혁신 역량평가 모형의 기본 틀(측정모형)

31) Lundvall, B.A. (1992) National Systems of Innovation: Towards a Theory of Innovation and Interactive Learning.

💡 17개 시도 간 지역 과학기술혁신 역량 격차 현황

➡ 17개 시도 간 격차를 지니계수로 측정하였을 때 2020년 이후 증가 추세



<그림 2-1-3> 17개 시도의 5년간 지역 과학기술혁신 역량 지수 격차 수준(2019-2023년)

- 경기·서울·대전이 차지하는 지역 과학기술혁신 역량 지수 비중이 '20년 31.9%에서 '23년 35.8%로 상승하여 지역 간 격차 증가는 경기·서울·대전과 타 지역과의 격차 증가에 기인

<표 2-1-1> 17개 시도의 5년간 지역 과학기술혁신 역량 지수 및 상대 수준
변화(2019-2023년)

지역	'23년 순위	지수(점)					상대 수준(1위 지역=100%)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경기	1	17.93	18.35	18.05	17.18	17.60	100	100	100	100	100
서울	2	15.7	15.19	15.73	15.43	16.95	87.6	82.8	87.1	89.8	96.3
대전	3	15.56	14.63	15.00	14.23	14.69	86.8	79.7	83.1	82.8	83.4
울산	4	8.19	8.66	8.43	7.29	7.41	45.7	47.2	46.7	42.4	42.1
경북	5	10.42	9.19	8.31	7.25	7.30	58.1	50.1	46	42.2	41.5
광주	6	7.13	7.29	6.26	6.47	7.27	39.8	39.7	34.7	37.7	41.3
충북	7	8.21	8.04	7.52	6.69	7.20	45.8	43.8	41.7	39	40.9
경남	8	6.79	7.04	7.97	7.84	7.17	37.9	38.4	44.1	45.7	40.7
부산	9	7.99	7.36	7.47	7.04	7.04	44.6	40.1	41.4	41	40
충남	10	7.50	7.90	7.29	6.89	6.93	41.8	43.1	40.4	40.1	39.4
인천	11	7.40	7.00	6.90	6.98	6.59	41.3	38.2	38.2	40.7	37.4
전북	12	7.71	7.89	7.95	6.62	6.15	43	43	44.1	38.5	35
대구	13	6.46	6.68	7.04	5.74	5.79	36	36.4	39	33.4	32.9
세종	14	6.17	5.92	5.64	4.73	5.02	34.4	32.3	31.2	27.5	28.5
강원	15	6.17	6.68	5.88	4.97	4.92	34.4	36.4	32.6	28.9	27.9
제주	16	5.20	6.19	4.77	4.12	4.81	29	33.7	26.4	24	27.3
전남	17	7.09	6.87	6.27	4.90	4.52	39.6	37.5	34.8	28.5	25.7
최상위 지역 비율		32.4%	31.9%	33.3%	34.9%	35.8%	32.4%	31.9%	33.3%	34.9%	35.8%